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4. 16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 4. 6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0. 4. 9
- 다. 상정일자 : 제15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2010. 4. 1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안 흥 기 지역경제과장

가. 개정이유

동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와 도·소매업자, 중소기업체,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에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

나. 주요개정내용

- 1)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내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또는 중소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또는 인근지역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조정

- 2)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단체의 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포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등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규정
- 3)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 소집 및 의결방법 회의록 작성과 참석수당 등을 규정
- 4) 안 제9조에서는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로,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 개설자 및 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 관리자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인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
- 5)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는 안 제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내용을 통보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이에 기명날인
- 6) 안 제13조에서는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

- 7)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조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이 해당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아울러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 8) 안 제15조에서는 안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검토보고 (전문위원 명 금 길)

- 동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내 대규모점포와 도·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인근 주민사이에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서울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된 준칙안이 시달되어 25개 자치구중 7개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지역 유통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균

형발전과 상호 우호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쟁조정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필요한 사항이며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수반되는 제반 경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여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